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-127호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
시행령 제24조제1항, 제25조제2항에 따라

건물 등에 부여(폐지포함)한 도로명주소를
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21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관악구 봉천동 886-88	관악구 봉천로45길 21-15	2010년 06월 03일	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45번도로	중앙동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 사유	비고
관악구 봉천로45길 21-13	2019년 11월 13일	건물철거	중앙동
관악구 봉천로45길 21-11	2019년 11월 13일	건물철거	중앙동
관악구 관악로 227-10	2019년 11월 15일	건물철거	중앙동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
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(☎02-879-6635)
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
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
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
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
사용됩니다.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
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
하면 고시 후 도로명주소로 사용가능합니
다.
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
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
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
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
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
다.

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470호(1973.12.1.)로 구역지
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60호
(2004.2.2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1호
(2009.11.19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
2014-261호(2014.7.17)로 변경 지정되고, 서
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6-99호
(2016.11.3)로 변경 지정(경미한 변경)된 관
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-1-2
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, 『도시 및
주거환경정비법』 제8조, 같은법 시행령
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
정비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
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
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
본법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
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21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-128호 봉천제4-1-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
(변경없음)

구 분	생활권 유형	구역 번호	동명	지번	면적(ha)	용적률	건폐율	층수	사업시행 방식	정비 유형	비고
기 정	-	-	봉천동	산101	5.5	230%	50%	-	주택재개발	전면	

2. 정비구역 지정(변경없음)

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봉천제4-1-2 주택재개발정비사업	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	55,455.3	-	55,455.3	

3. 정비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명 칭	면 적(㎡)			비율(%)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55,455.3	-	55,455.3	100.0	
공동주택사업부지	계		50,043.6	-	50,043.6	90.2	
	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13,691.1	-	13,691.1	24.7	
		도 로	3,558.2	-	3,558.2	6.4	
		공 원	10,132.9	-	10,132.9	18.3	근린공원
	획 지	소 계	36,352.5	-	36,352.5	65.5	
		획지 1	33,512.6	-	33,512.6	60.4	공동주택
		획지 2	1,008.7	감)87.2	921.5	1.8	종교용지1
		획지 3	921.5	증)87.2	1,008.7	1.7	종교용지2
		획지 4	909.7	-	909.7	1.6	복지시설 (형태변경)
	개별주택사업부지	계		5,411.7	-	5,411.7	9.8
정비기반 시설 등		소 계	3,863.7	-	3,863.7	7.0	
		도 로	3,863.7	-	3,863.7	7.0	
획 지		소 계	1,548.0	-	1,548.0	2.8	
		획지 5	129.2	-	129.2		
		획지 6	132.4	-	132.4		
		획지 7	201.9	-	201.9		
		획지 8	180.5	-	180.5		
		획지 9	201.4	-	201.4		
		획지 10	168.5	-	168.5		
		획지 11	167.6	-	167.6		
		획지 12	194.4	-	194.4		
		획지 13	172.1	-	172.1		

주) 개별택지사업부지는 기존 자력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계획함.

나. 용도지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용 도 지 역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소계	55,455.3	-	55,455.3	100	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	5,411.7	-	5,411.7	9.8	
제3종일반주거지역	50,043.6	-	50,043.6	90.2	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
1) 도로

구분	규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최초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점	종점	
기정	중로	2	-	18	집산 도로	일반 도로	549.6	봉천동 491-34번지	봉천동 1712-21번지	서고시2009-461 (2009.11.19)
기정	소로	3	-	4	국지 도로	일반 도로	75.1	봉천동 825-2번지	봉천동 491-34번지	서고시2009-461 (2009.11.19)

2) 공원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공원	근린 공원	관악구 봉천동 산102-48임 번지 일대	10,132.9	-	10,132.9	서고시2014-261 (2014.7.17)

라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분	시설의 종류		위치	면적(㎡)					비 고
				법정/서울시기준		기정	증·감	변경	
				기준	면적(㎡)				
변경	주민공동시설 (커뮤니티시설)	작은 도서관	획지1	1,000~ 1,500 세대 미만	2030이상	454	감)88.1	365.9	지역주민 시설개방 (용적률산정제외)
변경		어린이집	획지1		580이상	361	증)266.7	627.7	
변경		경로당	획지1		375이상	349	증)29.5	378.5	
변경		주민운동시설	획지1	-	-	965	증)584.2	1,549.2	
변경		어린이놀이터	획지1	-	-	1,207	증)109.6	1,316.6	옥외시설
신설		주민공동시설	획지1	-	-	-	증)188.4	188.4	
신설		청소년시설	획지1	-	-	-	증)194.7	194.7	
변경	근린생활시설		획지1	세대당 6㎡ 이하	6,186이하	452	증)531.2	983.2	
변경	관리사무소 및 경비실		획지1	10+ (세대수-50) ×0.05	59.05이상	339	증)192.7	531.7	

※ 작은 도서관, 어린이집, 경로당은 운영계획 및 협약서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반영하여
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용적률 적용완화 결정

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없음)

구 역 구 분		면적(㎡)	위치	정비·개량계획(동)					비고
명 칭				합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	철거 이주	
봉천4-1-2 주택재개발정비구역		55,455.3	봉천동 산101번지 일대	200	9	-	191	-	

2) 건축시설계획

구분	획 지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(%)		높이(m) (최고층수)	비고
	명칭	면적 (㎡)				정비계획	예정 법적상한		
기정	획지1	33,512.6	봉천동 산101번지 일대	공동주택	24이하	271이하	288.08이하	83.0m이하 (28층이하)	
	획지2	1,008.7	봉천동 산101-415번지 일대	종교용지	50이하	250이하	-		
	획지3	921.5	봉천동 478-26번지 일대	종교용지	50이하	250이하	-		
	획지4	909.7	봉천동 478-16번지 일대	복지시설	50이하	250이하	-		
	획지 5~13	1,548.0	봉천동 491-1번지 일대	개별필지 (9필지)	관계법령에 따름				
변경	획지1	33,512.6	봉천동 산101번지 일대	공동주택	24이하	271이하	288.08 이하	83.0m이하 (28층이하)	
	획지2	921.5	봉천동 산101-415번지 일대	종교용지	50이하	250이하	-		
	획지3	1,008.7	봉천동 478-26번지 일대	종교용지	50이하	250이하	-		
	획지4	909.7	봉천동 478-16번지 일대	복지시설	50이하	250이하	-	-	-
	획지 5~13	1,548.0	봉천동 491-1번지 일대	개별필지 (9필지)	관계법령에 따름 (존치지역)				

주택의 규모 및
규모별 건설비용

기정

중간

변경

■주택공급계획 : 997세대
- 건립규모(전용면적기준)

건립규모	기 준	정비계획용적률 (247%)		계획용적률 20%상향에 따른 증가된 용적률	법적상향용적률	
		세대수	비율		분양	소형
합 계	-	840	100	87	34	36
60㎡이하	전용면적 85㎡ 이하 80%이상	395	47		-	36
60㎡초과~85㎡이하		445	53	-	34	-
85㎡초과	전용면적 85㎡ 초과 20%미만	-	-	-	-	-

※ 소형주택 : 36세대 (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)
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(전용면적기준) : 164세대

건립규모	기 준	세대수	비율(%)
합 계	•기정 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의 17%이상 •금회 변경으로 증가 세대수의 20%이상 ※ 법적상향으로 증가되는 세대수 제외	164세대	100%
40㎡이하(40%~50%)		67세대	40.8%
40㎡초과~50㎡이하(40%~50%)		65세대	40.0%
50㎡초과~60㎡이하(10%~20%)		32세대	19.2%

- 존치지역 세대수 : 9세대

■증가세대수 : 중) 34세대 (3.4% 증가)
- 전체 건립규모(전용면적기준)

건립규모	소계	세 대 수				비 고
		정비계획 용적률	계획용적률 20%상향에 따른 증가된 용적률	법적상향용적률 분양	소형	
합 계	중) 34세대	중) 10	중) 16	감) 1	중) 9	
60㎡이하	중) 55세대	감) 3	중) 16	중) 33	중) 9	
60㎡초과~85㎡이하	감) 21세대	중) 13	-	감) 34	-	
85㎡초과	-	-	-	-	-	

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(전용면적기준) : 감) 11세대

건립규모	세 대 수	비 고
합 계	감) 11세대	
40㎡이하	중) 1세대	
40㎡초과~50㎡이하	중) 3세대	
50㎡초과~60㎡이하	감) 15세대	

■주택공급계획 : 1,031세대
- 건립규모(전용면적기준)

건립규모	기 준	정비계획용적률 (247%)		계획용적률 20%상향에 따른 증가된 용적률	법적상향용적률	
		세대수	비율		분양	소형
합 계	-	850	100	103	33	45
60㎡이하	전용면적 85㎡ 이하 80%이상	392	46	103	33	45
60㎡초과~85㎡이하		458	54	-	-	-
85㎡초과	전용면적 85㎡ 초과 20%미만	-	-	-	-	-

※ 소형주택 : 45세대 (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)
-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(전용면적기준) : 153세대

건립규모	기 준	세대수	비율(%)
합 계	•기정 용적률에 해당하는 계획세대수의 16%이상 •금회 변경으로 증가 세대수의 16%이상 ※ 법적상향으로 증가되는 세대수 제외	153세대	100.0
40㎡이하(임대주택의 30%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% 이상)		68세대	44.4
40㎡초과~50㎡이하		68세대	44.4
50㎡초과~60㎡이하		17세대	11.2

- 존치지역 세대수 : 9세대

※ 기정의 법적상향용적률 분양세대수 60㎡초과~85㎡이하 34세대는 오기임 → 60㎡이하 34세대

심의완화 사항	기정	◦ 정비계획용적률 : 271%이하, 법적상한용적률 : 288.08% ◦ 순부담율 (용도지역2단계 15%) : 계획 15.1% (건축물 환산 5% 포함) - 공원면적 5,059㎡ (10.1%), 보육시설 환산부지 2,502.2㎡이상 (5.0%) - 건축물(보육시설) 및 대지지분(850㎡) 기부채납	
		기반시설 5%완화에 대한 토지가격 추정금액	• 기반시설 5% 가치 산정 - $50,043.6\text{㎡} \times 5\% = 2,502.2\text{㎡}$ - $2,502.2\text{㎡} \times 242\text{만원(개별공시지가)} = \text{약 } 60\text{억}$
	변경	보육시설 설치 (약850㎡)	• 대지지분 : $850\text{㎡} \times 242\text{만원(개별공시지가)} = \text{약 } 20\text{억}$ • 건 축 비 : 지하2층/지상6층(지상1,520㎡, 지하940㎡) - 건축연면적 $2,460\text{㎡} \times 163\text{만원(표준건축비)} = \text{약 } 40\text{억}$
		※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후 기부채납하고, 서울시 “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”(2011.10 도시계획국) 준용	
건축물의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	기정	◦ 정비계획용적률 : 271%이하, 법적상한용적률 : 288.08% ◦ 순부담율 (용도지역2단계 15%) : 계획 15.1% (건축물 환산 5% 포함) - 공원면적 5,059㎡ (10.1%), 보육시설 환산부지 2,502.2㎡이상 (5.0%) - 건축물(보육시설) 및 대지지분(850㎡) 기부채납	
		기반시설 5%완화에 대한 토지가격 추정금액	• 기반시설 5% 가치 산정 - $50,043.6\text{㎡} \times 5\% = 2,502.2\text{㎡}$ - $2,502.2\text{㎡} \times 242\text{만원(개별공시지가)} = \text{약 } 60\text{억}$
	변경	보육시설 설치 (약850㎡)	• 대지지분 : $850\text{㎡} \times 242\text{만원(개별공시지가)} = \text{약 } 20\text{억}$ • 건 축 비 : 지하2층/지상5층(지상1,744.39㎡, 지하715.61㎡) - 건축연면적 $2,460\text{㎡} \times 163\text{만원(표준건축비)} = \text{약 } 40\text{억}$
		※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후 기부채납하고, 서울시 “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”(2011.10 도시계획국) 준용	
건축물의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	기정	◦ 대지경계선 : 6m, 근린생활시설변 : 2m, 보육시설(구립) 동측 : 3m	

3)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(변경없음)

구 분		산정내용				
기정	토지이용계획	구역면적	획지 (공동주택 등)	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	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	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
		50,043.6㎡	36,352.5㎡	13,691.1㎡	2,171.0㎡	6,461.1㎡
	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(순부담)	•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-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$= 13,691.1\text{㎡} - 2,171.0\text{㎡} - 6,461.1\text{㎡} = 5,059.0\text{㎡}$ (종상향면적대비 10.1%)				
	계획(기준)용적률	• 계획(기준)용적률 : 230% • 개발가능용적률 $= \text{계획용적률} \times (1 + 1.3\alpha)$ $= 230\% + (230 \times 1.3 \times 0.13916) = 271.61\%$ • 정비계획용적률 = 271% 이하 적용				
	개발가능용적률	• $\alpha = \text{기부채납 면적/기부채납후 대지면적}$ $= 5,059.0 / 36,352.6$ $= 0.13916$				

바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구분	계획내용		비고
도시경관	•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,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• 주변지역 개발로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들이 입지한 것을 고려하여 최고28층으로 계획하여 스카이라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•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유도		
환경보전	토지이용	•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• 녹지공간 최대 확보	
	대 기 질	•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•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	
	수 질	•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	
	폐 기 물	•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•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	
	소음·진동	•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•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•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	
재난방지	•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•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사용 •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		

	으로서 침수피해에 대응 ·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·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, 조경수로 활용	
--	--	--

사.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 시기	사업시행자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기정	주택재개발정비사업 (관리처분계획에 의함)	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	봉천제4-1-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기존 : 666세대 계획 : 997세대 증가 : 331세대 (임대200세대포함)	
변경	주택재개발정비사업 (관리처분계획에 의함)	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	봉천제4-1-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	기존 : 666세대 계획 : 1,031세대 증가 : 365세대 (임대198세대포함)	

아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정비구역 주변 현황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	비 고
대상지 남측 구암초등학교 입지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(사업시행인가)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, •대상지는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음 •공사시 공사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리	

자.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건립위치	부지면적(㎡)	동수	세대수	세대규모(전용)	비고
기정	획지1	33,512.6	6 (소설믹스 포함)	200	39.98㎡ : 67세대 49.98㎡ : 65세대 59.98㎡ : 68세대	
변경	획지1	33,512.6	2 (소설믹스 포함)	198	38.42㎡ : 84세대 41.16㎡ : 84세대 59.96㎡ : 30세대	동수 정정

1) 재개발소형주택의 공급면적 산정

구분	내 용	비 고
기정	공급기준 (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) × 공급비율(30~50%)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
	공급비율 50%	조례 제30조
	법적상한 용적률	재개발 용적률 완화
	정비계획 용적률	계 분양 소형주택
	288.08%	17.08% 8.54% 8.54%
	소형주택 건설면적	$\bullet 33,512.6\text{㎡} \times 8.54\% = 2,862.0\text{㎡}$ 이상 $\bullet$ 소형주택 건설규모 $= (288.08\% - 271\%) \times 50\%$ $= 17.08\% \times 50\% = 8.54\%$ $\bullet$ 소형주택 건설 면적 $= \text{대지면적} \times 8.54\%$ $= 2,963.52\text{㎡}$
변경	공급기준 (법적상한용적률 - 정비계획용적률) × 공급비율(30~50%)	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
	공급비율 50%	조례 제30조
	법적상한 용적률	재개발 용적률 완화
	정비계획 용적률	계 분양 소형주택
	288.08%	17.08% 8.54% 8.54%
	소형주택 건설면적	$\bullet 33,512.6\text{㎡} \times 8.54\% = 2,862.0\text{㎡}$ 이상 $\bullet$ 소형주택 건설규모 $= (288.08\% - 271\%) \times 50\%$ $= 17.08\% \times 50\% = 8.54\%$ $\bullet$ 소형주택 건설 면적 $= \text{대지면적} \times 8.54\%$ $= 2,936.31\text{㎡}$

2)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세대 산정

건립규모	기정	변경	변경후	비율(%)	비고
합 계	164세대	강) 11	153세대	100.0	
40㎡ 이하	67세대	중) 1	68세대	44.4	
40㎡ 초과~50㎡ 이하	65세대	중) 3	68세대	44.4	
50㎡ 초과~60㎡ 이하	32세대	강) 15	17세대	11.2	
산출근거	$\bullet$ 전체세대수 : 953세대수 [1,031세대 - 78세대(법적상한 증가분 제외)] $\bullet$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: 153세대 $\bullet$ 정비계획용적률에 해당하는 기정세대수의 16% : $850 \times 0.16 = 136.0\text{세대}$ $\therefore$ 136세대 계획 $\bullet$ 계획용적률(20%상향)에 따른 증가세대수의 16% : $103 \times 0.16 = 16.5\text{세대}$ $\therefore$ 17세대 계획				

※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은 최소 16%를 유지함

차. 2014년 제9차('14.5.16)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(수정가결)

- 〈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〉
- ▶ 수정사항 -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
 - 경관측면에서 용적률 및 층수 하향조정, 임대주택 확보 및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형주택을 소형으로 변경 계획
 -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건축계획 수립(최대 2.5m 하향조정),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대상지내 빗물저류시설 설치
 - 양녕로변 공원위치는 북측 상도근린공원과 연계성, 접근성 및 양녕로변의 차량소음 차폐 등 고려하여 결정
 - ▶ 조건사항 - 건축·교통 통합 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
 - 근린공원 조성시 양녕로(25m) 및 단지 내부에서의 보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
 -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면밀 검토하고, 소방차 진입노선 및 주차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검토
 - 경관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용지 위치는 근린공원측으로 이동배치 검토
 - 외부조경 계단난간 설치시 금속재료의 사용을 지양
 - 저소득층의 재정착을 고려하여 소형주택의 추가 확보 검토
 - 양녕로에서 유턴차량 진입시 교통처리계획 검토
 - 저류시설은 공원 하부로 이동배치

4. 관계도면 : 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
- 가. 정비구역 결정도
- 나. 용도지역 결정도(기정/변경)
- 다. 기반시설 결정도
- 라.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/변경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도서(지형도면 포함) : 생략(비치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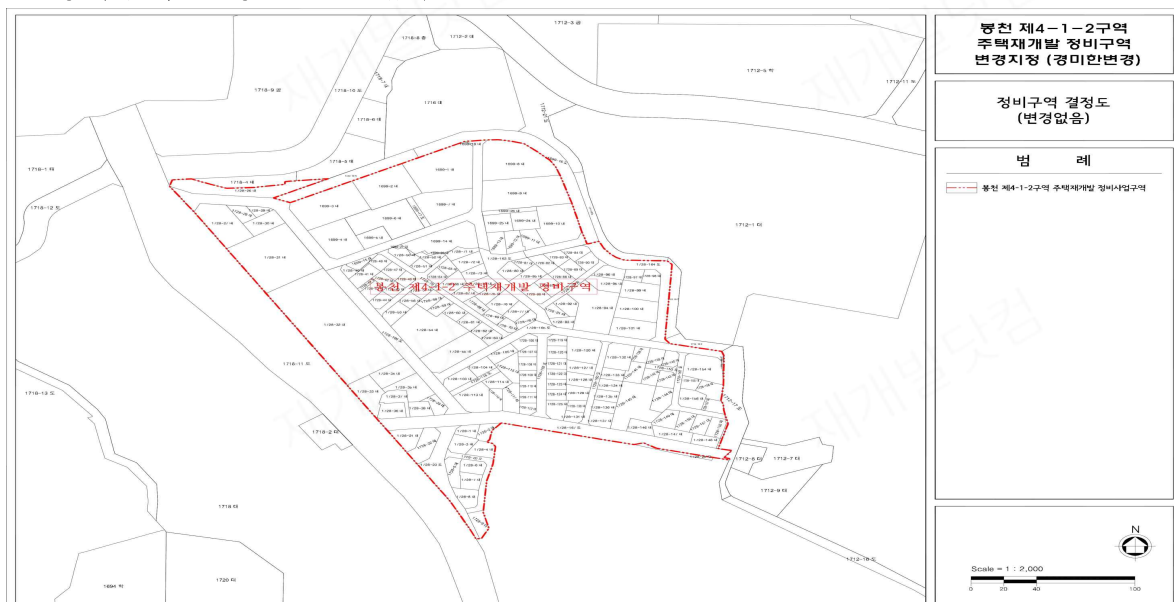
6. 관련서류

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 주택과(☎ 02-879-6303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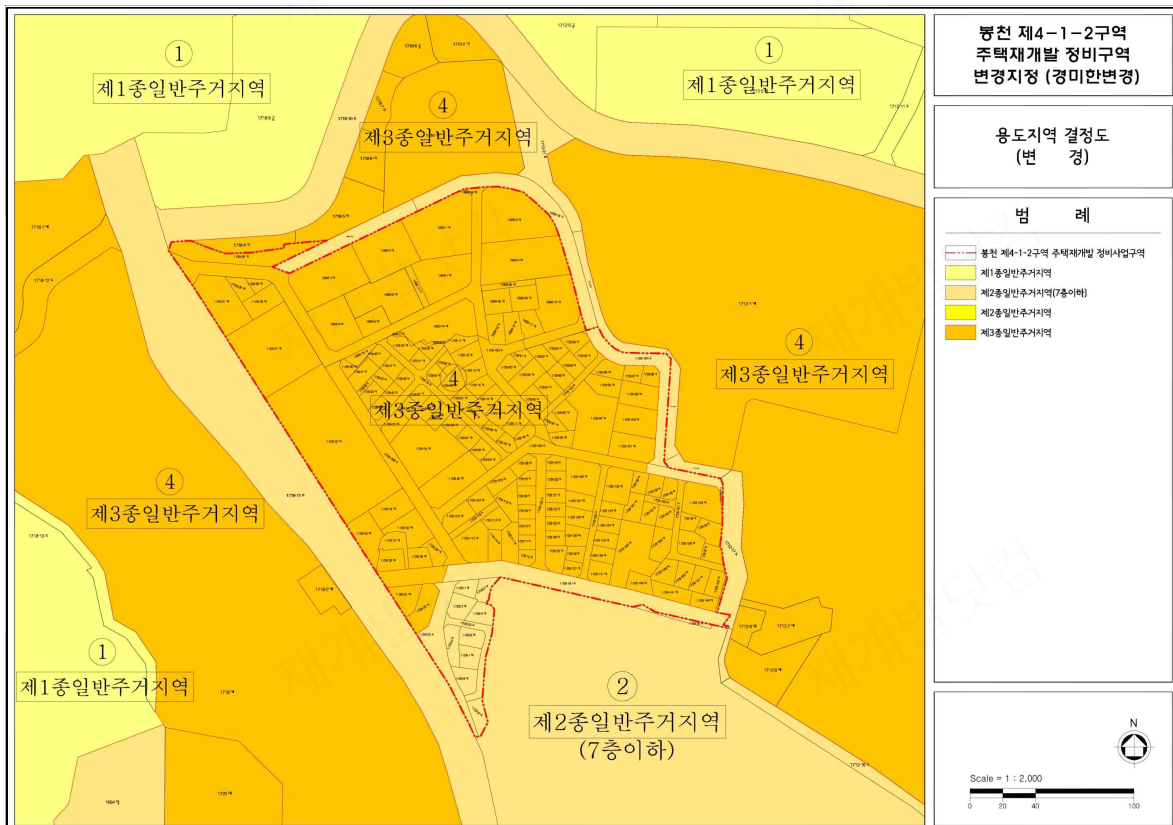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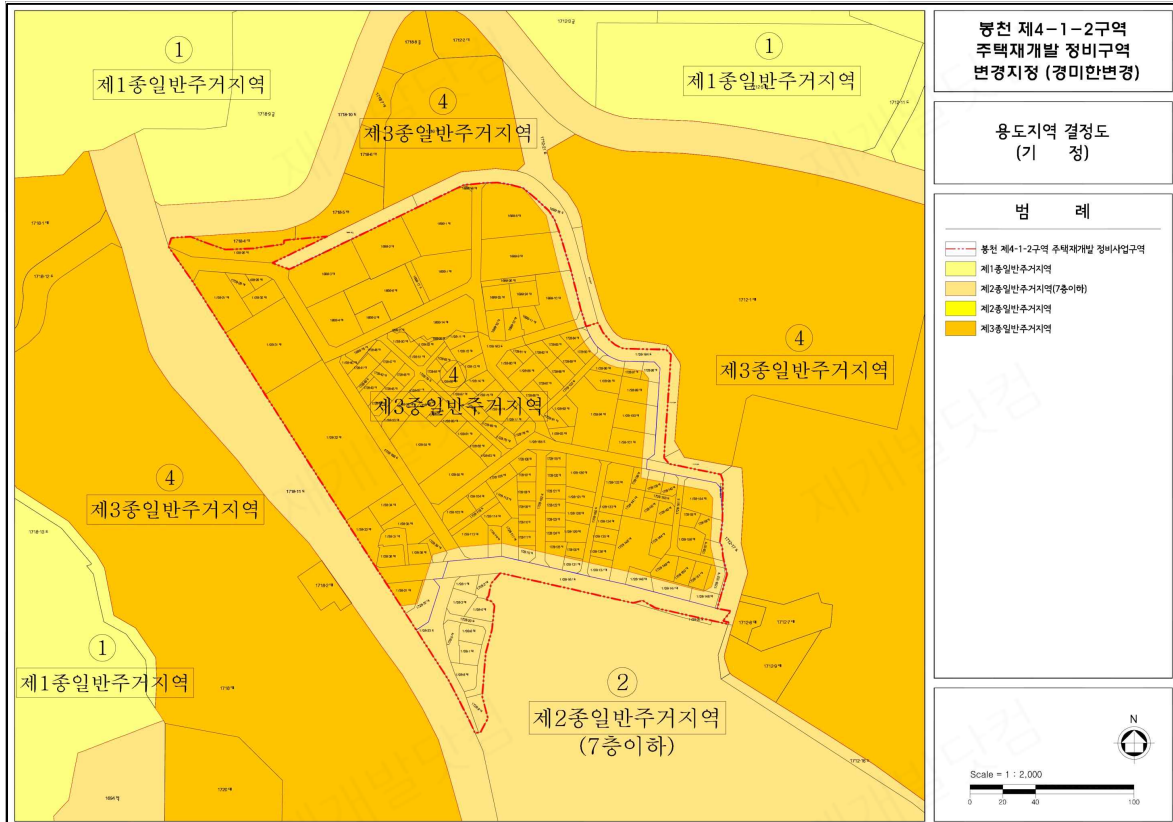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(참고형)

○ 정비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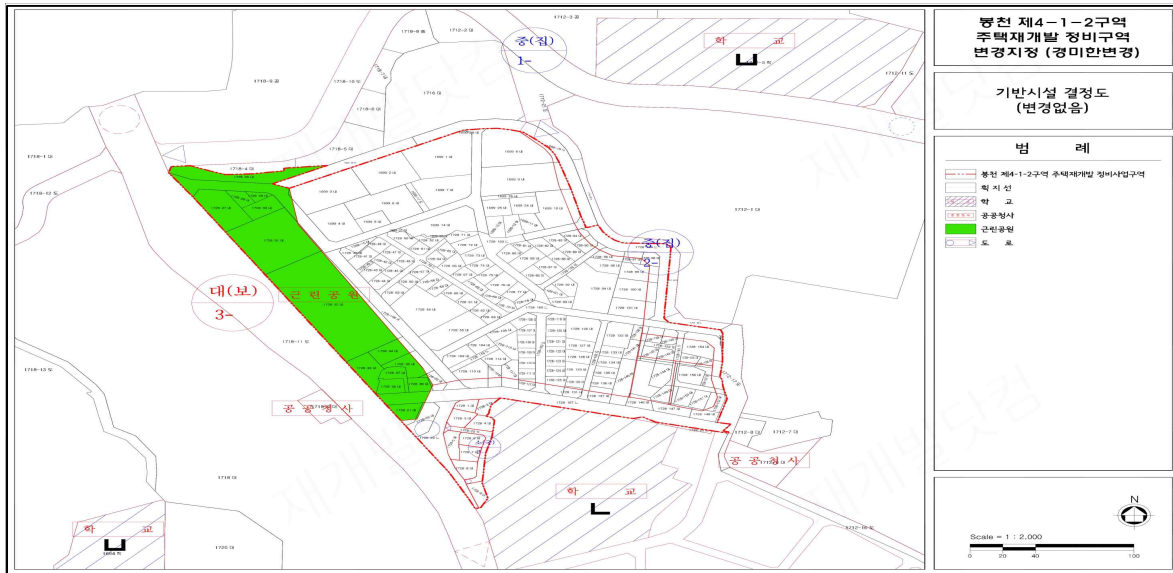


○ 용도지역 결정도 (기정/변경)



주) 도면 오류 정정

○ 기반시설 결정도 (변경없음)



○ 정비계획 결정도 (기정/변경)

